

충청북도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소방서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관련 “별표”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제3조 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2항을 동조의 본문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별표중 충주소방서 및 음성소방서 관할구역에 관한 개정사항은 1997년9월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 (생 략)	제1조 (현행과 같음)
제2조 (생 략)	제2조 (현행과 같음)
제3조 (서 장) ①소방서장은 지방소방정 으로 보한다. ②소방서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· 감독한다.	제3조 (서 장) 소방서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괄하며 소속공무 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(별표)

충청북도소방서의 명칭, 위치 및 관할구역

명 칭	위 치	관 할 구 역
청주소방서	청주시 상당구 복문로2가 116-90	청주시 일원, 청원군 일원, 보은군 일원
충주소방서	충주시 연수동 529-1	충주시 일원
제천소방서	제천시 모산동 산23	제천시 일원, 단양군 일원
영동소방서	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557-2	영동군 일원, 옥천군 일원
증평소방서	괴산군 증평읍 증평리 906-3	괴산군 일원, 진천군 일원
음성소방서	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594-114	음성군 일원